

<p>대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                  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                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                 (議事棒 3打)</p> <hr/> <p>(參 照)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                 제출년월일 : 1994.12.7.                 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</p>	<p>1.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                 2. 제안이유                  ○원 동작구 대방동사무소 위치가 아래쪽으로 치우쳐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어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이전하여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                 ○동청사부지로 노량진근린공원 일부 438㎡를 해제 사용하고                  ○서울시 도시공원 정비원칙에 따라 용봉정근린공원 인접지 594㎡를 대체 공원으로 지정코자 함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3. 주요요지                  ○입안내용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시 설 명</th> <th rowspan="2">위</th> <th rowspan="2">치</th> <th colspan="3">변 경 내 용(㎡)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기 정</th> <th>변 경</th> <th>증 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변경 결정</td> <td>노 량 진 근 름 공 원</td> <td>동작구 대방동 일대</td> <td>350-6</td> <td>395,386</td> <td>394,948</td> <td>감438</td> <td>대방동사무소 신축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용 봉 정 근 름 공 원</td> <td>동작구 흑석동 12</td> <td>114-</td> <td>78,500</td> <td>79,094</td> <td>증594</td> <td>대체공원 지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시 설 명	위	치	변 경 내 용(㎡)			비 고	기 정	변 경	증 감	변경 결정	노 량 진 근 름 공 원	동작구 대방동 일대	350-6	395,386	394,948	감438	대방동사무소 신축	"	용 봉 정 근 름 공 원	동작구 흑석동 12	114-	78,500	79,094	증594	대체공원 지정
구분	시 설 명					위	치	변 경 내 용(㎡)			비 고																	
		기 정	변 경	증 감																								
변경 결정	노 량 진 근 름 공 원	동작구 대방동 일대	350-6	395,386	394,948	감438	대방동사무소 신축																					
"	용 봉 정 근 름 공 원	동작구 흑석동 12	114-	78,500	79,094	증594	대체공원 지정																					
<p>4.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○도시계획사항                  -대방동 350-6일대(시유지) : 일반주거지역, 공원, 수도(대방배수지) 일부                  -흑석동 114-12(구유지) : 자연녹지지역, 구청소차고는 철거예정</p> <hr/> <p>○委員長代理 申龍吉 議案番號 1209番, 龍山區 靑坡 3街 136 일대 및 城北區 城北洞 168-274 일대에 대한 都市計劃施設 變更決定에 대하여 意見 있으시면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崔相嬭委員,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○崔相嬭委員 崔相嬭委員입니다.                  우리가 都市計劃施設 告示할 적에 公園用地 解除나 指定을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公園을 解除하는 것만 중요하고 또 指定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. 指定하는 것이나 解除하는 것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검토를 하고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</p>	<p>그라서 本 案件에 대하여는 代替公園을 지정해서 公園用地를 解除하고자 하는데 이 代替公園을 指定하고자 하는 장소가 과연 公園으로써 적임하나 또 이 地籍圖에 보면 林野로 돼 있습니다. 既 公園化돼 있는 것을 형식상 公園으로 指定하고자 하는 事案이 될지 모릅니다.                  그래서 本委員으로서는 이 事案은 現地踏査한 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保留하는 것을 正式 動議합니다.                  (「再請합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                  ○委員長代理 申龍吉 林翼根委員,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○林翼根委員 林翼根委員입니다.                  崔相嬭委員님이 指摘하신 대로 기존 龍山區 靑坡洞 일대에 존재하고 있는 公園의 성격과 城北區 城北洞 弘益大學附屬中·高等學校 옆에 있는 代替公園 豫定地와는 質的인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